

중소벤처기업부령

소 상 공 인 보 호 및 지 원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기 관 명 (부 서 명)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연 월 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개정이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이하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용자 대출금의 부실채권 매각 대상 규정(안 제1조의5)

1) 채무자의 폐업, 파산, 강제집행, 행방불명, 사망 등의 사유로 회수 불가 채권, 소멸시효 완성 또는 완성될 채권,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법원면책 결정에 따른 회수불능 채권, 회수 실익이 없는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규정함.

2) 부실채권의 매각은 회수 불가 채권 또는 회수 실익이 없는 채권을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추가로 국가정책상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3 각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매각 또는 해당되는 자가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추가로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6,00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조치임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추진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5(부실채권의 매각 절차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상각 또는 매각할 수 있는 부실채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각할 수 있는 부실채권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
가. 채무자의 강제집행, 폐업,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라. 채무가 면제되었거나 무효가 된 채권
마. 회수예상비용이 회수예상액을 초과하는 등 법적 절차를 실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2. 매각할 수 있는 부실채권 : 제 1호의 가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채권 및 국가정책상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3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매각 또는 해당되는 자가 매각을 요청

하는 채권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제1항의 부실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부실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5(부실채권의 매각 절차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상각 또는 매각할 수 있는 부실채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각할 수 있는 부실채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 가. 채무자의 강제집행, 폐업,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나. ~ 라. (생략) 마. 회수예상비용이 회수예상액을 초과하는 등 법적 절차를 실행할 실익이 없는 채권 2. 매각할 수 있는 부실채권: 제1호가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채권	제1조의5(부실채권의 매각 절차 등) ① (현행과 동일) 1. (현행과 동일) 2. 매각할 수 있는 부실채권: 제1호가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채권 <u>및 국가 정책상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매각 또는 해당되는 자가 매각을 요청하는 채권</u>